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0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봉양순,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인제, 김재진,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임규호,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생략되어 있는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 소생태계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  
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  
한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  
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
<u>&lt;신 설&gt;</u>	1. “생태계”란 <u>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u>
<u>&lt;신 설&gt;</u>	2. “소(小)생태계”란 <u>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u>
1. ~ 6. (생   략)	3. ~ 8.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u>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u> 가. <u>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u>

② (생 략)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 원칙)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생략)
- ②·③ (생략)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

1. 영 -----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및 제1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